붙임 2

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 기준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

○ **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**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**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**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○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범위

○ **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**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 학교'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(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'대학알리미' 사이트 상의 학교 정보 조회 등을 통해 분교 해당 여부에 대해 지원자가 반드시 확인*)
  * 예시 :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○ **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**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나 그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이원화캠퍼스(제2캠퍼스) 대학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